

산림기술자 자격증 [] 신규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청명세	기술종류	등급	구분	재발급 사유	감면신청
			[]신규발급 []재발급		[]기초수급자 []장애인
발급명세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2.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수탁기관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장애인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